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 심사보고서

2024. 12.  .
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9월 19일, 김종양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9월 2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18회 국회(정기회)

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11.20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회부

제2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(2024.11.25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(2024.11.28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김종양 의원)

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「도로교통법」과 「도로법」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리청이 각각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으나 경찰

청은 적재중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및 단속 인력 부족으로 적재중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경찰청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차량이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재중량 안전기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서기영 전문위원)

개정안은 경찰이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적재중량이나 적재용량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의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현행 규정에 따르면 적재중량의 110%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과적차량으로 단속되어야 하나, 「도로법」상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, 경찰에 의한 단속은 가능하지만, 적재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부족과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현재 과적차량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 따르면 사진 및 영상매체로 적재중량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, 영상매체를 통한 단속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, 도로관리청으로부 송부받은 적재량 측정자료가 「도로교통법」제160조 제3항에서 말하는 '사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'에 해당하지 않기에 적발고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

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적재량 측정자료를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[1]에 관한 안전기준이나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됨.

다만,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제3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시·도경찰청장이 부과·징수하므로, '시·도경찰청장'으로 수정 필요함.

## 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1) "적재중량"이란 자동차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설계 중량으로 총중량·축하중으로 측정하고, "적재용량"이란 실제 적재 한계 내에서 적재할 수 있는 최대용량으로 폭·길이·높이로 측정함.

## 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조은희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3건의 「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.

## 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## 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